

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5. 6. .

발 의 자: 의장

1. 주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(이하 “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- 나. 특별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건전재정확립을 위해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, 실효성, 예산 집행 및 소요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,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0월 10일까지로 한다.
- 라.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달서구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247억 6천만 원 흑자에서 2020년 138억 6천만 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21년 69억 원, 2022년 70억 원, 2023년 137억 원, 2024년 247억 원의 적자를 나타냄.
- 나. 같은 시기 일반회계세입 중 자체 세원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.43%에서 2024년 14.50%로 감소하고, 같은 시기 재정자립도는 22.61%에서 18.29%로 떨어짐.

- 다. 달서구는 에코전망대, 달서별빛천체관 등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, 청소차고지관리동 건립을 비롯한 8개 주요사업에 184억 1,000만 원의 추가부담금을 발생시키는 등 과도한 예산을 부주의하게 사용하고 있음.
- 라. 그 결과 2024년 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6억 432만 원 중 166억 4,281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고, 2025년 6월에는 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8억 원 전부와 주차장 특별회계 중 예비비 80억 원을 사용하고자 하면서 달서구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시하고 있음.
- 마. 이에 달서구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소요 예산을 살펴보고,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함.

3. 관련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(위원회 설치)
- 나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(특별위원회)부터 제9조(위원의 선임)까지

관련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1. 11. 1, 2021. 12. 31)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(신설 2021. 12. 31)

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(중전 제2항에서 이동 2021. 12. 31)

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 11. 1, 2021.12. 31)

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. 다만,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. (신설 2021. 12. 31)

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 (신설 2011. 11. 1, 중전 제5항에서 이동 2021. 12. 31)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거자가, 최다

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11. 11. 1., 2025. 5. 12.)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(개정 1998. 3. 11)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